

수원지방법원 2020. 9. 15 선고 2019나27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0. 9. 15 선고 2019나2794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1. 9 선고 2017가단571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양호

피고, 항소인C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석, 조성민

변론 종결2020. 7. 14.

판결 선고2020. 9. 15.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1. 9. 선고 2017가단571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 등기소 2004.

4. 30. 접수 제178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마지막행 이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④ 원고는 1999. 7.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그 일대 부동산을 B으로부터 매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주택부지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위 각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 및 농지전용허가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원고가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다.
- ⑤ 원고가 위와 같이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이를 주택용지로 변경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제약이 발생하게 되자 원고는 2004. 4.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매도인인 B에게 다시 이전하였다가 이를 피고 및 D 명의로 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⑥ 한편,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매수하여 주택용지로 개발한 경기도 양평군 K 대 564m²(위 토지는 K대 390m² 였으나 2008. 7. 2. L 대 171m²와 M 대 3m²와 합병되었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6. 6. 20. N에게 매도하였는바, 2000. 3. 20.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3,000만 원은 위 주택용지에 대한 대금이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이 아니다.
- ⑦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원고가 2002년경 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토지 사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판사강태훈

판사안희경

판사김봉남

별지